#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10월 6일 / 포항시장

나. 회부일자 : 2026년 10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3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6. 10. 15.) 상정 . 질의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선영 환경정책과장)

가. 동의를구하는 사항

○ 포항환경학교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능력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공개 모집하여 민간 위탁함에 있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제안사유

○ 환경체험교육을 통해 양질의 시민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포항환경학교와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을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포항시 환경교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3. 위탁사무 내용

○ 위탁사무명 :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운영

○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연간종합운영계획 수립

○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다양한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4. 위탁사무 개요

○ **시 설 명 :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 **위　　치**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길 180, 중명생태공원 내

○ **시설규모** : 3층 필로티 건물 (건물면적 500.29㎡ / 연면적 998.97㎡)

| 구 분 | 층 별 | 시 설 내 용 | 연면적(㎡) |
|---|---|---|---|
| 계 | | | 998.97 |
| 로 비 | 1층 | 로비 및 계단 | 82.07 |
| 포항환경학교 | 2층 | 웰컴라운지, 에코라운지, 체험존, 실감영상실, 사무실 | 456.4 |
| 유아기후환경교육관 | 3층 | 환경교육체험실, 라이브스케치, 기후변화체험존 등 | 460.5 |
| 야외 | | 태양광발전시설 | |

## 5.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절차

공개모집 공고 ➜ 제안서 접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협상 ➜ 계약체결

○ 모집방식 : 공개 모집

○ 공고기간 : 10일 (2026년 11월경)

○ 공고내용 : 위탁기관 자격, 위탁사무, 선정기준, 신청서류, 심사방법 등

○ 자격요건 :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대학·대학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선정기준 : 자격 적정성, 환경교육 관련 사업수행 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전문인력 확보, 안전관리 능력, 사업수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방법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 기관 중 최고점을 획득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며, 동점자 처리 및 단독 신청 시 심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별도 선정계획에 따름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민간위탁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회 의원
   나.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마.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검토결과 : 적정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붙임 1]

## 7. 위탁운영 추진계획

○ 2026. 11. 수탁기관 공고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 2026. 12. 수탁자 선정 심의 및 협약 체결

○ 2027. 1.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위탁 운영

8.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장준호)

○ 본 동의안은 포항환경학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을 통합하여 함께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포항환경학교 및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은 남구 연일읍 중명생태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항환경학교는 양질의 시민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유아 대상의 놀이·체험형 환경교육까지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음.

○ 다음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및 신규 위탁 운영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환경교육시설은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과 프로그램 기획·운영 역량이 요구되는 곳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한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근거와 절차에 부합하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관리·운영의 적정성 또한 타당하여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도 기존 환경학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추가된 유아기후환경교육관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들의 올바른 환경 의식 함양과 실천 의식 향상에 이바지하는 핵심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9.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10. 토론의 요지 : 없 음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